

「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4. 9. 30. 개정 판 (시행 2024. 9. 1.) → 2026. 5. 4. 개정 판 (시행 2026. 5. 4.)

바뀜 5 · 신설 2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64/compare?from=1558&to=174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1:23:0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<u>생활건강증진원 산하</u>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〈개정 2026-05-04〉</u>
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. 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.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.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.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	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. <u>〈개정 2026-05-04〉</u> 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.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.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. <u>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</u> 5. <u>기타</u>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4조(조직) ① 건강증진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은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	제4조(조직) ① 건강증진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은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 <u>〈개정 2026-05-04〉</u>
제5조(건강증진위원회) <u>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.</u> ① <u>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(위원장), 건강증진센터장(서기)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한다. 〈개정 2024-09-30〉</u> ② <u>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 1. <u>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사항</u> 2. <u>기타 관련된 사항</u> ③ <u>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 1. <u>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 2. <u>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</u>	제5조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)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. 2.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. 3.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 4.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.	제6조(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)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6-05-04> 1.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. 2.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. 3.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 4.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.
<신 설>	제7조(보고)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 <신설 2026-05-04>
<신 설>	제8조(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6-05-04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직원"을 "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"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
3.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제2항 중 "통활한다"를 "통할한다"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)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.
2.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.
3.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
4.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보고)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